

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
[시행 2024. 5. 20.] [관세청고시 제2024-22호, 2024. 5. 14., 일부개정.]

관세청(세원심사과), 042-481-7873

【제정·개정이유】

◇ 개정 사유

- 「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의 세율적용 우선순위 개정 내용을 반영한 고세율원재료 정의 보완
- 고세율원재료 제조·가공 사실확인 제출 서류 간소화

◇ 주요 개정내용

- "고세율원재료" 용어의 정의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고관세율 부과 품목 포함(제2조의2)
 - 자유무역협정(FTA) 협정관세 세율이 관세법 적용 세율과 같은 경우 FTA협정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*이 개정됨에 따라,
 - * 「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세율 적용 우선순위)
 - "고세율원재료"에 해당하는 수입농림축산물의 범위에 시장접근물량 초과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FTA 협정관세율 부과 물품 포함

【고세율 원재료】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장접근물량 초과 관세율 부과 물품 ▪ 특별긴급관세 부과 물품 <추 가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"좌 동" ▪ "좌 동" ▪ 시장접근물량 초과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 물품

- 고세율원재료 제조·가공 사실 확인 서류 간소화(제4조, 제5조, 별지 제1호 및 제2호)
 -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한 수출물품의 제조·가공 확인 서류로서 각서(별지 제2호서식) 제출을 폐지하고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 내용 정비(별지 제1호서식)